

# 내부 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2022.05.09.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소속 구성원이 감사 주관부서에 대학 내부의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장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①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란 본 대학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뿐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여 대학의 행·재정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 ② '내부 신고자'란 상기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감사 주관부서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내부신고 방법)

- ① 내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증빙자료를 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소속 등 인적사항
  2. 내부신고 대상자 및 내부신고 내용
  3. 신고취지 및 이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구술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적은 후 내부 신고자의 서명을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 (내부신고 처리)

- ① 기획처장은 내부 신고자의 인적사항, 경위 및 취지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다.
- ② 기획처장은 내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제외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내용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와 신고대상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내용 등 본 대학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6. 다른 법률 또는 규정, 제도 등에 의해 관련절차(재판, 수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인 사항
  7. 기타 기획처장이 조사를 진행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획처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획처장은 내부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났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비밀보장)

- ① 내부신고 처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기획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 (내부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7조 (보호대상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3.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② 기획처장은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 (포상)

기획처장은 내부 신고자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한 후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부 칙(2022.05.09.)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